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제처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3. 7. 00. ~ 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8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 “3급 또는 4급 1명”을 “3급 또는

4급 3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는 삭제한다.

별표1,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(제9조제1항 본문 관련)	
(앞단 생략) ...	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10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	7
행정사무관	47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42
행정주사	43
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(비서)	1
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	4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4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	23
운전주사	1
행정주사보	14
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	3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4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운전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	16
행정서기	4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· 운전서기 · 사회복지서기 또는 사서서기	4
행정서기보	2
행정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운전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	5
사무운영서기보	4
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 담당)	1

[별표 2]

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(제9조제1항 단서 관련)	
(앞단 생략) ...	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10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	7
행정사무관	50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44
행정주사	40
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(비서)	1
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	4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4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	21
운전주사	1
행정주사보	14
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	3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4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운전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	16
행정서기	4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· 운전서기 · 사회복지서기 또는 사서서기	4
행정서기보	4
행정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운전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	5
사무운영서기보	4
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 담당)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대변인) ① · ② (생략)	제2조(대변인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, 홍보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, 디지털소통팀장은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③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, 디지털소통팀장은 <u>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-----.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제3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~ ③ (생략)	제3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담당관, 법무감사담당관,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⑤ ~ ⑨ (생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
제4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4조(운영지원과) ----- 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6조(여성정책국) ① (생략)	제6조(여성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, 성별영향평가과,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7조(청소년가족정책실) ① ~

④ (생략)

⑤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, 청소년활동진흥과, 청소년활동안전과, 청소년자립지원과, 학교밖청소년지원과, 청소년보호환경과, 가족정책과, 가족지원과, 가족문화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⑥ ~ ⑮ (생략)

제8조(권익증진국) ① (생략)

② 권익증진국에 권익정책과, 권익지원과, 권익침해방지과, 권익보호과, 권익기반과 및 아동청소년보호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·과학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청소년가족정책실) ① ~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⑥ ~ ⑮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권익증진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

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⑧ (생략)

제9조(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 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여성가족부 직제」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, 별표 2의 정원 중 2명(행정서기보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) 및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 및 그 밖의 정원 중 8명(3급 또는 4급 1명, 5급 2명, 6급 2명, 7급 1명, 9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---.

----- 10퍼센트-----

-----.

② -----

10명(3급 또는 4급 3명, -----

-----.

제10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안전과장 및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< 삭 제 >

< 삭 제 >